

부속서 4
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

1. 대한민국의 경우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.
2. 유럽연합의 경우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유럽연합이 지명하며 이 협정의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통보된다.